

전기절연 테이프 품질검사기준 및 방법제정

공업진흥청은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절연용 테이프 품질검사기준 및 방법을 제정 고시하였으니 본회 각 회원업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983年 12月 7日  
공업진흥청장

다 음

전기절연용 테이프

C-전-4

상품지정 : 공업진흥청고시 제83-403호(83. 8. 13)  
제 정 : 공업진흥청고시 제83-807호(83. 12. 7)

1. 면고무 테이프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 기타 일반적인 전기절연에 사용되는 면고무 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품 질

1) 외 관

가) 꺾인 곳, 흠이 없고, 현저한 점착제의 배어저 나옴이 없을 것.

나) 절단면은 균일하게 감아 권선이 빠져 나오든가 전체가 이그러져서는 안되며 양측면이 평평하여야 한다.

2) 치 수

다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두께(mm)	두께의허용차(mm)	폭(mm)	폭의허용차(mm)	한타래의길이(m)
0.5	±0.05	19	±1.0	15 이상

3) 성 능

다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퀀 호	벗겨짐	점착력(kg)		인장하중(kg)	신장율(%)	내전압
		평상시	가열후			
각시험편에 대하여 2개이하일 것	손가락에 묻어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9 이상	7 이상	10 이상	4 이상	1000V에서 1분이상 견딜 것.

다만, 가열후 점착력시험은 사전검사전 완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다. 시험방법

테이프의 외관, 치수, 성능시험 방법은 KSC 2102(면고무테이프, 고무테이프류 시험방법)에 따른다.

2. 고무테이프 및 순고무테이프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에 쓰이는 고무테이프 및 순고무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품 질

1) 외 관

면고무 테이프에 따른다.

2) 치 수

다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종 류	두께(mm)	두께의허용차(mm)	폭(mm)	폭의허용차(mm)	한타래의 길이(m)
고무테이프	0.8	± 0.1	19	± 1.0	8이상
순고무테이프	0.45	± 0.1	19	± 1.0	12이상

3) 성 능

다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시험항목	고무테이프	순고무테이프
점착력	2이상	3이상
인장하중(kg)	2이상	3.5이상
신장율(%)	250이상	550이상
내전압	5000V로 3분이상견딜것	500V로 2분이상견딜것

다. 시험방법

테이프의 외관, 치수, 성능시험방법은 KSC 2102(면고무테이프, 고무테이프류 시험방법)에 따

른다.

3. 비닐접착 테이프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전기절연에 사용되는 비닐 접착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품 질

1) 외 관

면고무 테이프에 따른다.

2) 치 수

다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두께 (mm)	두께의허용차 (mm)	폭 (mm)	폭의허용차 (mm)	한타래의 길이(m)
0.2	±0.03	19	±1.0	10 또는 20 } +1.0 0

3) 성 능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특 성	
벗 거 짐	점착제가 바깥면(점착제가 도포되지 않으면)에 묻어서는 안된다.	
점착력	겹쳐 합치는 점착력 (kg·f/원폭) 가 열 후	3.0 이상
	180도 잡아당겨 벗겨진 점착력(g·f/원폭) 가 열 후	100 이상
인장강도 (kg·f/원폭)	정상상태	3.0 이상
	가 열 후	
신장율 (%)	정상상태	100 이상
	가 열 후	80 이상
내전압	5000V로 1분간 견딜것	

다만, 점착력,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가열후 시험은 사전검사전 완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다. 시험방법

테이프의 외관, 치수, 성능시험방법은 KSC2306(전기절연용 비닐접착테이프)에 따른다.

4. 표 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지 않고 명료하게 다음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 품명 및 종별

나. 폭(mm)×길이(m)

다. 제조자명

5.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방법은 KSA 3151(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식은 KSA 3109(계수조정용 샘플링검사)의 보통검사 1회 샘플링 검사방식에 따른다.

다. 검사항목 및 검사조건

검사항목	관정치수	검 사 수 준	
		일반 또는 특별수준	AQL
외관 및 표시		S-4	4.0
치 수		별 표	표
성 능	벗 거 짐	별	표
	점착력	"	"
	인장강도	"	"
	신장율	"	"
	내전압	"	"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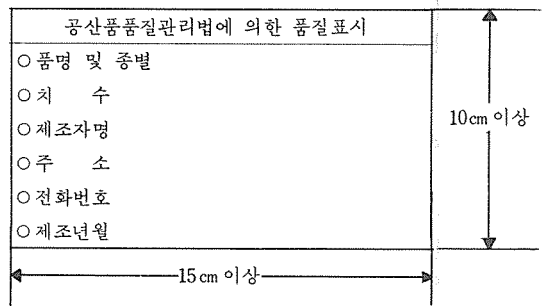
샘플링 계수	합격판정계수
3	0

라. 전 항목검사에 합격하여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6. 포장방법

가. 테이프는 상자, 관 또는 알루미늄, 필름 등으로 날포장하거나 또는 적당한 수량으로 맞추어 저장 및 수송등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나. 포장단위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실시일 이전이라도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對歐洲 輸出 問題

駐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歐洲國

# 공지사항

가들이 컴퓨터에 의해 모든 商品을 제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품 제고관리 Label을 부착하여 輸出할 경우 價格面에서 크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스웨덴의 수입업자들은 아국 전자제품이 품질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나 홍보활동 미약으로 소비자들은 외국 유명 Brand제품만 구입한다고 한다. 해당 會員業体는 이를 참고하여 對歐洲輸出增進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 輸入推薦 手數料 調整

商工部 貿政 1312-4852號(82. 10. 30)에 依據本會 輸入 推薦 手數料를 다음과 같이 調整 施行합니다.

現 行	調 整	施行日
US弗當 0.90원	US弗當 0.80원	84. 1. 1

## 電子 電氣製品 수입 추천요령 중 일부 改定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 제48호

전자전기제품 수입추천 요령 중 일부 개정

전자전기제품 수입 추천요령(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44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3년 12월 27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C C C N		품목명	추천대상품목	
			현 행	개 정
8514	0202	확성기	전품목	“5인치 이하의 콘스피카”이외의 것

부 칙

이 요령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세판매장에서의 국산품 판매

서울세관에서는 당관 관할보세판매장에서 우수국산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여 외화획득 및 해외 관광객에게 우수 국산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회원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규칙이 83. 10. 13일자로 개정되어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6호에 의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의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니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많은 우수 국산품이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서 울 세 관 장

